

2016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44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10월 3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감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 감채기금 재원중 ‘15회계년도 일반회계 ‘순세계잉여금’ 전입금 150,000백 만원이 454,305백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
- 나.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금 및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‘16 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<수입 및 지출 내역>

(단위 : 백만원)

수 입				지 출					
구 분	수정계획 (A)	당초계획 (B)	증 감 (A-B)	구 분	수정계획 (A)	당초계획 (B)	증 감 (A-B)		
합 계	471,883	167,578	304,305	합 계	471,883	167,578	304,305		
전입금	순세계 잉여금 ¹⁾	454,305	150,000	304,305	예수금 상환 ³⁾	원금	150,000	150,000	-
	기타 전입금 ²⁾	8,092	8,092	-		이자	8,092	8,092	-
이자수입	186	186	-	차입금원리금 상환 ⁴⁾	8,800	-	8,800		
예치금 회수	9,300	9,300	-	일반운영비	30	30	-		
				예치금	304,961	9,456	295,505		

- 1) 전입금 중 순세계잉여금 :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경비를 공제한 잔액의 50%를 감채기금에 적립
- 2) 전입금 중 기타 전입금 :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전입금
- 3) 예수금 상환 : 지하철 건설채무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수한 원리금을 상환
- 4) 차입금 원리금 상환 : 공공자금 기금 차환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

※ 작성자 : 재정관리담당관 재정총괄팀 김혜미 (☎ 2133-6866)